**특허 전용 실시권 설정계약서**

[ ](이하 "갑"이라 한다.)과 [ ](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이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실시 및 해당 특허를 적용한 제품의 생산 및 유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제3조에 기재된 갑의 특허권(이하 "본 건 특허"라 한다)를 이용한 (이하 “본 건 제품”)을 생산, 유통하는데 있어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단, 본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의 서면에 의한 계약 종료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으로 연장되며 연장된 계약기간 만료시에도 그러하다.

제3조 (특허권의 표시)

본 계약의 목적이 되는 본 건 특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허 등록번호

- 발명의 명칭

제4조 (전용실시권 설정 및 독점 영업권 부여)

① 갑은 본건 제품의 생산을 을이 하게 될 경우 제5조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을에게 본건 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부여하기로 하며 이러한 경우 전용실시권의 등록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에게 제5조 제1항 소정의 실시지역 내에서 본건 제품의 유통(양도, 대여, 수입, 수출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하 본 계약에서 같음) 및 홍보와 관련하여 계약기간 동안 독점적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제5조 (전용실시권의 설정 내용)

① 전용실시권 부여시 을이 본건 특허를 실시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영역은 국내 또는 국외 전역으로 한다.

② 본건 특허에 대한 을의 전용실시권은 전용실시권 설정 등록일로부터 본 계약 효력만료일까지로 한다.

③ 본 건 특허에 대한 실시 내용은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양도의 청약(양도를 위한 전시를 포함), 대여의 청약(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 방법의 사용을 포괄하는 것으로 한다.

⑤ 을이 본건 제품을 생산을 하게 될 경우 본 건 특허에 대한 실시료는 본건 제품의 매출액의 [ ]%(부가세별도) 또는 생산원가의[ ]% 금액 중 큰 액수를 실시료로 지급하기로 한다.

⑥ 실시료의 정산은 매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매월 1일~말일까지 발생한 실시료를 다음달 5일까지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을은 제조된 제품의 생산량 및 판매액, 생산원가 등 실시료 산출에 관련된 정보를 기록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갑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관련 장부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생산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포함하며 제조 산업의 일반 기준을 따른다.

제6조 (실시료의 감액과 변경)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실시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을의 감액청구가 실시료의 부당한 감액을 목적으로 함을 입증할 경우 갑은 을의 감액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을이 본건 특허를 실시하여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본 건 특허에 대한 실시 이외에 제3자가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실시하여야만 하는 경우

2. 을의 기술지원 요청을 받고도 갑이 기술지원 및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히할 경우

3. 본건 특허권 중에서 일부 또는 전부의 권리에 대하여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심결 또는 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또는 일부의 권리가 소멸한 경우

제7조 (기술 및 영업지원)

① 을이 본 건 특허를 실시하여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갑에게 본 건 특허의 실시와 관련된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 갑은 이에 협력한다. 단,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갑이 본 건 제품을 특정 제3자에게 판매 요청할 경우 을은 이에 협력한다.

제8조 (특허표시)

을은 본 건 특허를 실시하여 생산한 제품, 포장, 카탈로그 등에 본 건 특허의 특허번호를 표시한다.

제9조 (개량발명)

본 건 특허를 실시하는 중에 이에 기초한 새로운 발명을 하거나 기술을 개발한 경우 그러한 개발이나 발명에 대한 권리의 귀속 및 행사 방법은 그 기여도에 따라 별도로 논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다만, 그러한 개량 발명이 본 건 제품에 반영되는 경우 그러한 제품의 유통 및 홍보와 관련하여서는 을에게 제4조 제1항에 따른 권리와 관련하여 우선협상권을 부여하기로 한다.

제10조 (특허의 관리)

① 갑은 계약기간 동안 본 건 특허에 관한 관리의무를 부담한다. 만약, 을이 자신의 비용으로 본 건 특허의 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경우 을은 그로 인한 비용을 갑에게 지불하는 실시료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 을은 제3자가 특허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지체없이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침해 배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침해 배제에 필요한 모든 협조를 제공한다.

③ 제3자의 침해로 인하여 배상받게 되는 손해배상금은 침해배제를 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법률적 조치를 취한 당사자의 이익으로 한다.

제11조 (특허권 및 실시권의 양도 등)

① 갑은 계약기간 동안 본 건 특허를 포기하거나 타에 양도할 수 없으며 법률상 기타 행정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할 경우에는 을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갑이 본 계약상의 지위와 일체로 본 건 특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을은 합리적 사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지 않는다.

②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을은 본 건 특허에 대한 실시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재실시 설정을 할 수 없다.

제12조 (비밀유지 의무)

당사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타에 제공 혹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본 건 특허를 이용한 제품의 제조와 관련하여 특허 등을 통하여 공개되지 않은 기술은 공지의 기술이 아닌 한 영업비밀로 간주된다.

제13조 (계약의 해지 등)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시 타방당사자는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그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금은 금 원으로 예정한다.

1. 갑이 본 건 특허의 실시권 설정행위를 완료하였음에도 을이 6개월 이내에 실시를 포기한 경우와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2. 을이 조업을 중단하여 상당기간 동안 조업이 재기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갑이 본 건 특허의 실시권을 성실히 부여하지 않은 경우

4. 본 계약상의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

② 을이 본 건 특허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경제성, 상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확정적으로 판단한 경우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을은 이미 지급한 선급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을이 해산·청산·파산·지급불능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을의 대표이사가 그 소유 주식 및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본 계약서 관련 사업에서 벗어나게 된 경우 본 계약에 의한 을의 실시권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다만, 이 경우 을은 선급금을 포함하여 갑에게 이미 지급한 실시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 (불가항력)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도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화재·홍수·재앙·법령 개정·폭동·반란으로 인한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나 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한 불가항력에 처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즉시 가능한 상세사항과 향후 진전사항을 타방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원인이 제거된 직후 신속하게 제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 (계약의 수정 및 변경)

본 계약은 쌍방의 권한 있는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수정·보정·정정·변경될 수 없다.

제16조 (기타)

① 본 계약은 지금까지 양 당사자간에 교환된 합의와 약정을 구체화한 것이며, 본 계약 체결 이전에 당사자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루어진 모든 협의 또는 약정을 대체한다.

② 본 계약기간 동안 본 계약의 기술과 관련한 개량기술에 대하여 새로운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미리 협의한다. 단, 개량발명에 대한 기여도 평가에 따라 갑의 단독 특허로 출원·등록하게 되는 경우 갑은 해당 특허의 실시와 관련하여 을에게 우선협상권을 부여하기로 한다.

제17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관할 법원은 갑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당사자가 각각1통씩 보관한다.

2000 년 00 월 00 일

특허권자(갑)

주 소 :

법인명 :

대표자 : (인)

실시권자(을)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